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Ⅰ. 제안경위

1. 정진철 의원 대표발의안

가. 제 출 자 : 정진철 의원 외 9명

나. 의안번호 : 제2259호

다. 제출일자 : 2021. 3. 22.

라. 회부일자 : 2021. 4. 6.

2. 송아량 의원 대표발의안

가. 제 출 자 : 송아량 의원 외 11명

나. 의안번호 : 제2262호

다. 제출일자 : 2021. 3. 26.

라. 회부일자 : 2021. 4. 6.

Ⅱ. 제안사유

1. 정진철 의원 대표발의안

- 서울교통공사(이하 '공사')의 경우 작년 1조 1천억원 적자(가결산), 올해 1조 6천억원(추정)이 넘는 운영자금 부족 문제, 단기차입에 의 한 운영자금으로 성과급 지급 등 계속된 차입경영과 누적된 운영적자 로 인한 불건전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공사 차원의 적 극적인 자구대책 시행이 필요함.
- 공사의 불건전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의 공사에 대한 지휘감 독권을 기반으로 한 경영 개선 요구를 명시하여 공사의 적극적인 자 구대책 마런 시행을 통한 효율적인 경영과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,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송아량 의원 대표발의안

○ 현행 조례는 서울교통공사가 해당 사안에 대해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고의 대상을 의회라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그 대 상이 불분명한 만큼 보고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

Ⅲ. 주요내용

1. 정진철 의원 대표발의안

- 경영 개선 요구의 요건을 신설함(안 제32조제2항)
- 사장의 이행책무와 시장의 권한을 명시함(안 제32조제3항)

2. 송아량 의원 대표발의안

○ 서울교통공사가 의회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경우에 그 보고대상을 명확 히 규정하고자 함(안 제5조의2제1항)

Ⅳ. 참고사항

1. 정진철 의원 대표발의안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기업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같: 2021. 4. 9. ~ 2021. 4. 16.

○ 제출의견 : 의견 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- 서울시장(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) : 보류
-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제2항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만 구속력 있는 경영개선명령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 안 제32조제2항에 시장의 경영개선 요구권을 부여
- 공사 사장의 지위나 신분에 관한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처분에 관한 것으로 지방공기업법상의 해임사유는 제한적 열거사유로 보이며, 법률이 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해임할 경우 상위법인 지방 공기업법 제58조제5항제1호, 제78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2와 충돌할 소지 있음
-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경영개선 요 구권과 사장해임 권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범위 를 넘는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 위반 소지 있어 신중한 검토 필요

2. 송아량 의원 대표발의안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기업법」 및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

○ 기 : 2021. 4. 09. ~ 2021. 4. 16.

○ 제출의견 : 의견 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- 서울시장(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) : 원안가결
- 현행 조례에서 '의회 보고' 규정 내용
- · 제5조(정관) 제2항에서 공사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인가 및 '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'하도록 규정
- · 제5조의2(의회에 대한 보고) 제1항제3호에서 공사 조직 및 정관 변경 시 '의회에 보고'하도록 규정
- 동일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대상이 상이하므로 '시의회 소관 상임위원 회'로 구체화하고 통일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 동의

Ⅴ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1) 정진철 의원 대표발의안

가.개요

○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32조에서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 이라 한다)이 실시하는 서울교통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의 업무 및 회계·재산관리에 대한 검사 결과¹)에 따라 필요한 경우 "서울교통 공사 사장"(이하 "사장"이라 한다)에게 경영개선 요구를 할 수 있고.

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시장의 경영개선 요구를 따르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시장이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시장의 공사의 경영개선 요구 및 요건 신설(안 제32조제2항 신설)
- 동 개정조례안 제32조제2항은 공사의 회계 및 재산 등에 대한 분석결과 3년이상의 당기순손실 발생, 영업수입의 현저한 감소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 시장이 사장에게

¹⁾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(보고 및 검사 등) 시장은 공사의 업무,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.

경영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
○ 현행 「지방공기업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제73조²)에 따르면 시장은 공사의 설립·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·감독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감안 할 때.

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시장이 공사의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경영계획 및 부채 관리에 대한 요구 대상을 구체화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에서 명시된 위임 사항을 벗어나지 않고 선량한 관리·감독자로서의 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

- 다만, 일부 개선요구 상황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조례안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, 조례안을 보다 구체 화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임
- 한편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의회 입법법률 자문결과 "시장은 공사의 운영 등 업무를 관리·감독할 수 있어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경영개선 요구를 할 수가 있다."는 의견이 제출된 바 있음³⁾

²⁾ 지방공기업법 제73조(감독 등) ① <u>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·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·감독한다.</u> 3) 서울시의회 입법법률 자문결과 요약(서울시장 경영개선 요구)

구분 비고 「지방공기업법」의 규정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사에 대한 폭 넓은 지휘·감독권 행사가 허용되고, 공사의 요구 |경영부실을 막기 위해 시장이 공사의 사장에게 경영개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"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| 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."는 공사의 설립 목적에도 부합합니다. 따라서 **시장이 본건** 기능 조항을 근거로 공사의 사장에게 경영 개선 요구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의 장이므로, 지방공기업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사인 서울 요구 B | 교통공사의 운영 등 업무를 관리·감독할 수 있습니다.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을 구체화한 가능 |것으로 이해되며, **서울시장은 개정안의 규정에 따라 공사에 경영 개선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** 공기업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서울교통공사 조례의 제32조에서 서울시 요구 장의 **서울교통공사의 '경영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'을 추가로 상세하게 규정**할 수있다할 것입니다. 따라서 현 조례개정안에서 보듯이 조항을 추가하여 **서울시장은 관리자에게 공사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경영** 기능 **개선 요구를 할 수가 있다할 것**입니다.

- 사장의 이행책무과 시장의 사장 해임 권한 관련(안 제32조제3항 신설)
- 동 개정조례안 제32조제3항은 시장의 경영개선 요구를 사장이 지체 없이 따르도록 하는 한편 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

시장이 사장의 경영개선 요구에 대한 사장의 이행책무는 법에 따라 시장이 공사에 대한 관리·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타당성이 인정되다 할 것임

- 다만, 시장의 경영개선 요구를 사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시장의 해임권한은 법에서 명시된 해임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
- 법에 따르면 시장은 사장의 임면권한을 가지는 동시에 특별한 경우 사장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는 권한 또한 가지게 되며, 해임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
- 첫째, 법에서 정한 시장과 사장의 "경영성과" 계약에 따른 이행실적,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에서 하위 평가를 받거나 직전연도에 비해 현저히 하락한 경우 시장은 사장을 해임할 수 있고,

둘째,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한 "경영진단"의 결과에 따라 행정 안전부 장관이 공사의 사장에 대한 해임을 시장에게 명할 경우 시장은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 할 수 있음

※ 참고 : 시장의 사장 해임 근거

| | 110 |
|--|--|
| 구분 | 내용 |
| | 지방공기업법 제58조(임원의 임면 등)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 1.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2.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 3. 제78조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결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2(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공사의 사장을 연임시키거나 해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. 2. 해임기준 가.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,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경우나.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,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경우나.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,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된 경우 |
| 행정안전부장 관이 실시한 "경영진단"의 결과에 따른 해임 근거 | 지방공기업법 제58조(임원의 임면 등)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. 1. 제78조의2제3항에 의한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.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(경영진단 및 경영 개선 명령)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지방공기업의 임원의 해임, 조직의 개편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|

○ 따라서, 시장의 경영개선 요구 불이행시 시장이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영진단에 따라 시장에게 사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하거나

자칫 관련법에서 위임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 별도의 해임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 있다는 점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2) 송아량 의원 대표발의안

가. 개요

○ 동 개정조례안은 의회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보고 대상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 "의회"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"서울특별시의 회 소관 상임위원회"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서울교통공사는 도시철도 1~8호선을 각각 운영하고 있는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경 영을 기반으로 시민에게 안전한 도시철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7년 5월 출범⁴)하였고 이후 자하철 1~8호선, 9호선 2·3단계 구간(293역, 319.3km) 등을 운영하는 거대 도시철도 운영기관으로 변모하였음
- 하지만,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서울지하철을 만든다는 당초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서울교통공사는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는 상황으로 통합이후 당기순손실만 하더라도 '18년도 5,389억원에서 '20년도에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에 따라 전년대비 약 90%가 늘어난 1조 1,137억원으로 증가하였고, 올해에도 1조 5,991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

^{4) &}quot;서울지하철 통합혁신 추진방안",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98호 교통정책과-27876(2014.12.31.)

〈서울교통공사 결산 관련 손익현황〉

(단위: 억워)

| 구 분 | '18년 말 | '19년 말 | '20년 말 |
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총수익 | 21,549 | 20,550 | 16,102 |
| 총비용 | 26,938 | 26,415 | 27,239 |
| 당기순손실 | △5,389 | △5,865 | △11,137 |

- 서울교통공사의 대규모 적자는 무임수송·대중교통환승할인 및 코로나19 등에 따른 적자가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지만 서울교통공사 스스로 자구 책을 마련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
- 서울시의회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시민을 대표하여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문제, 부대사업 투자, 그 밖에 도시철도 안전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해 관리·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서울교통 공사가 각종 사안을 서울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에 명문 화5) 한 바 있음
-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서울교통공사가 보고하 도록 하는 대상을 "의회"라고 폭 넓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"서울특 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6)"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

^{5) 「}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5조의2(의회에 대한 보고) ① 공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. 예산서(사업설명서) 및 결산서 2. 다른 법인에 출자 및 신규투자사업 관련 사항 3. 공사조직 및 정관 변경 시 4. 국비지원사업을 포함한 전동차 보전계획 등 도시철도 세부계획 5. 부대사업계획 및 결과 6. 안전운전 및 철도안전 시행계획 7. 서울시 및 중앙 투자심사 대상 사업 8. 철도사고(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7조) 9. 기타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

^{6) 「}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제33조(상임위원회의 소관) ①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 9. 교통 위원회 가. 도시교통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. 도시기반시설본부 사무 중 도시철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. 서울교통공사에 관한 사항 라. 삭제 <2017. 3. 9.> 마. 서울시설공단에 관한 사항

이를 통해 보고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고,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정관 변경은 "소관 상임위원회"에 보고하고, 제5조의2에 따른 보고 사항은 "의회"로 규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